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57
----------	------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안 제3조)
- 다. 구청장 및 공기업 등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규정(안 제4조)
- 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5조)
- 마.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 바. 충전시설 설치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9. 2.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 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등 향후 5년간 소요 비용 추계
 - 2021년 8월 기준 성동구민(법인 제외) 성동구 전기, 수소자동차 등록내역 참고
 - 환경부, 서울시의 차량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에 비례하여 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출	○ 전기차 (352대×786)	277,000	277,000	277,000	277,000	277,000	1,385,000
	○ 수소차 (23대×1,000)	23,000	23,000	23,000	23,000	23,000	115,000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환경부, 서울시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을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출은 변경될 수 있음
- 환경부, 서울시 등의 구매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점차 전기자동차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 지원금액도 낮춰 지원대수를 늘려갈 계획임

6. 작성자: 맑은환경과 공업8급 유근우(02-2286-5489)

□ 2021년 전기자동차 환경부, 시, 구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참고(구 보조금은 22년기준)

구분	제작 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구비 (만원)	총지원 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일반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167	405.6	310.2	64.06	800	200	100	11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167	405.6	310.2	64.06	800	200	100	1100
		코나(기본형, HP, 모던)	167	405.6	366.0	64.08	800	200	100	11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167	405.6	366.0	64.08	800	200	100	11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155	254.2	188.4	39.24	690	172	86	948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690	172	86	948
		코나(경제형, HP, 모던)	155	254.2	188.4	39.24	690	172	86	948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690	172	86	948
		아이오닉(HP)	165	277.0	211.0	38.33	733	183	91	1007
		아이오닉(PTC)	165	277.0	196.0	38.33	701	175	87	963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185	405	354	72.6	800	200	100	1100
		아이오닉5(롱레인지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185	429	364	72.6	800	200	100	1100
		아이오닉5 (롱레인지2WD, 익스클루시브)	185	423	345	72.6	800	200	100	1100
		아이오닉5 (롱레인지AWD, 프레스티지)	185	370	344	72.6	773	193	96	1062
		아이오닉5(롱레인지AWD, 익스클루시브)	185	390	340	72.6	785	196	98	1079
		아이오닉5 스탠다드 2WD	185	342	292	58.2	791	197	98	1086
		아이오닉5 스탠다드 AWD	185	319	280	58.0	774	193	96	1063
	G80	225	433	411	87.2	379	94	47	520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167	385.0	348.5	64.08	800	200	100	1100
		니로(HP, 노블레스)	167	385.0	348.5	64.08	800	200	100	1100
		니로(PTC, 프레스티지)	167	385.0	303.0	64.08	780	195	97	1072
		니로(PTC, 노블레스)	167	385.0	303.0	64.08	780	195	97	1072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167	247.7	187.2	39.24	717	179	89	985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167	247.7	187.2	39.24	717	179	89	985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167	388.0	269.0	64.08	750	187	93	1030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167	388.0	269.0	64.08	750	187	93	1030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155	254.0	178.0	39.24	688	172	86	946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155	254.0	178.0	39.24	688	172	86	946	
르노삼성	ZOE ZEN	140	309.0	236.0	54.5	702	175	87	964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구비 (만원)	총지원 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ZOE INTENS ECO	140	309.0	236.0	54.5	702	175	87	964
		ZOE ITENS	140	309.0	236.0	54.5	702	175	87	964
	BMW	i3 120Ah Lux	150	248.0	160.0	42.36	673	168	84	925
		i3 120Ah SoL+	150	248.0	160.0	42.36	673	168	84	925
	한국GM	볼트EV LT	148.6	414.0	273.0	65.94	760	190	95	1045
		볼트EV Premier	148.6	414.0	273.0	65.94	760	190	95	1045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150	244.0	215.0	47.4	649	162	81	892
		Peugeot e-208 GT Line	150	244.0	215.0	47.4	649	162	81	892
		DS3 E-tense So Chic	150	237.0	187.0	47.4	605	151	75	831
		DS3 E-tense Grand Chic	150	237.0	187.0	47.4	605	151	75	831
		Peugeot e-2008 SUV Allure	150	237.0	187.0	47.4	605	151	75	831
		Peugeot e-2008 SUV GT Line	150	237.0	187.0	47.4	605	151	75	831
	테슬라	Model 3(SRP RWD)	225	352.1	212.9	87.5	684	171	85	940
		Model 3(Long Range)	233	446.1	273.1	101.5	682	170	85	937
		Model 3(Performance)	261	414.8	250.8	72	329	82	41	452
		Model 3(SRP RWD HPL)	225	383.6	304.8	56.88	730	182	91	1003
		Model 3(Long Range HPC)	233	495.7	438	72	750	187	93	1030
		Model 3(Long Range HPL)	233	527.9	440.1	84.96	750	187	93	1030
		Model 3(Performance HPL)	261	480.1	415.8	84.96	375	93	46	514
		Model Y(Long Range)	217	511.4	432.5	84.96	375	93	46	514
Model Y(Performance)		250	447.9	393.9	84.96	372	93	46	511	
Model Y(Standard Range)		217	348.6	279.3	56.88	742	185	92	1019	
벤츠코리아	EQA250	160	302.7	204.2	69.73	618	154	77	849	
세미시스코	SMART EV Z	106.6	150.0	133.7	26.1	639	159	79	877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80	84.1	83.8	6.77	400	140	50	590
		TWIZY (K1J05-1Z)	80	84.1	83.8	6.77	400	140	50	590
	대창모터스	DANIGO	80	60.8	74.4	7.25	400	140	50	590
	케이에스티	마이브 M1	80	56.9	52.9	10.08	400	140	50	590
	씨보모빌리티	CEVO-C	80	66.7	70.4	8.07	400	140	50	590
		CEVO-C SE	80	69.4	63.2	10.16	400	140	50	590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6천이상 100%, 6천~9천 50%, 9천이상 미지원), 국·시비에 비례하여 지원

※초소형 전기승용차: 시비의 35% 정액지원(50만원)

※수소승용차: 정액지원(200만원)

< 관 계 법 규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본조신설 2016. 1. 27.]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3. 26., 2021.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3. 2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한다)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중 발급기관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인 표지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통합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7.9., 2017.9.21., 2019.9.17., 2020.5.19.>

1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